

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8. 3. .

제안자 : 건설문화위원장

수정이유

- 안 제6조 제2항의 축제평가단 활동내용 중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
-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평가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

수정주요내용

- 안 제6조 제2항의 조문중 “축제의 조사·연구를 통하여”를 “축제의 조사를 통하여” 로 하고
- ③항에 이어 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“④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” 로 수정

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- 안 제6조 제2항의 조문중 “축제의 조사·연구를 통하여”를
“축제의 조사를 통하여” 로 하고
- ③항에 이어 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“④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”

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축제의 평가) ① (생략)</p> <p>② 축제평가단은 시장·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중 현지를 답사하여 <u>축제의 조사·연구를 통하여</u> 주민참여, 문화예술진흥,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축제의 평가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축제평가단은 시장·군수가 신청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사기간중 현지를 답사하여 <u>축제의 조사를 통하여</u> 주민참여, 문화예술진흥,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</p> 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<u>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